

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 결과 보고

I 감 사 개 요

- 감사기간: 2020. 9. 7. ~ 9. 25. ▶ 기간 中 9일간
- 감사대상: 민간위탁기관 3개소

기관명 (관련부서)	감사기간	감사일수	감사 범위
육아종합지원센터 (가족복지과)	2020. 9. 8. ~ 9. 10.	3일	2018. 1월~ 2020. 7월
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(가족복지과)	2020. 9. 15. ~ 9. 17.	3일	
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(보건소 재반지소)	2020. 9. 22. ~ 9. 24.	3일	

- 감 사 반: 감사팀장 외 3명
- 감사 중점사항
 - ▶ 예산·회계 및 민간위탁금 집행실태, 종사자 채용 등 업무처리 적정성
 - ▶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, 지도·감독 적정 여부 등

II 감사대상기관 현황

구분	●●●●●	□□□□□	◆◆◆◆◆
수탁기관	♠♠♠♠♠	♠♠♠♠♠	♣♣♣♣♣
수탁기간 (최초위탁일)	2017.8.1.~2022.7.31. (2017. 8. 1.)	2020.5.1.~2023.4.30. (2017. 5. 1.)	2019.6.1.~2022.5.31. (2010. 6. 1.)
기관예산 (2020년 민간위탁금)	573,439천 원	103,879천 원	277,088천 원
위치	●●동	▣▣동	●●동
인력 (명)	종사자	11	3
	이용자	31,208	263
			6
			2,341

□ 처분계획

○ 총괄

구분	행정상(건)				재 정 상(건/원)						신분상(명)		
	계	시정	주의	개선	계		회수		회수		계	훈계	주의
					건	원	건	원	건	원			
계	25	9	15	1	3	592,492	3	592,492	-	-	○	○	
본처분	19	8	10	1	3	592,492	3	592,492	-	-	○	○	
현지처분	6	1	5	-	-	-	-	-	-	-	-	-	-

○ 기관별 지적사항

구분	합계	종사자관리	예산·회계	시설관리, 공사·계약	운영규정, 조례	민간위탁 선정
계	25	6	10	6	2	1
육아종합지원센터						
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						
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						
가족복지과(관리부서)						
보건소 재반지소(관리부서)						

□ 세부 지적사항

1 ●●●●●

○ '회계관직 대리자 미지정' 및 지출(여입)결의서 작성 부적정

2018년~2019년까지 회계관직 대리자 미지정 및 회계관직 부재시 회계관직의 도장을 날인하여 지출(여입)결의서를 작성함.

○ 예산편성 및 결산 절차 부적정

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,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법인이사회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나, 법인이사회 의결 후 시설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거나 제출을 지연함.

○ **직원 공개채용 미실시**

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,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와 재계약함.

○ **센터 시설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**

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해야하나 2019년 공사 5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미실시함.

○ **계약에 관한 사항**

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, 2018.1월부터 2020. 9. 10. 현재까지 공사·계약 26 건에 대하여 홈페이지공개 및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.

○ **인건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**

계속·반복 용역 제공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소득총액의 3.3%를 소득세로 부과해야하나,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필요경비 공제후 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에 해당되자 소득세를 미징수함.

○ **소방훈련·교육 실시 결과기록부 미작성**

소방훈련·교육 실시 후 별지서식의 실시 결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하나, 소방훈련·교육 실시 결과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음.

○ **근로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징구**

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하나 2019. 1.부터 2020. 8.까지 근로계약 체결한 52 건에 대하여 미징구함.

2 □□□□□

○ 종사자 호봉승급 착오로 인건비 과다 지급

호봉 재확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승급해야하나, 호봉 재확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승급하여 인건비 86,992원을 과다 지급함.

○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

교통비를 '출장여비'로 세출과목을 편성하였고, 「청소년사업안내(보건복지부)」 '출장여비 지급기준'에 따라 집행해야하는데도 기준과 상관없이 월 5만원으로 정액 지급함으로써 출장여비 410,000 원을 과다지급함.

○ 성범죄·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
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하나,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·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없이 채용함.

○ 보조금 목적 외 사용

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타기관 명의의 '주민세(재산분)' 95,500 원을 보조금으로 납부함.

○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지연

「위·수탁 계약서」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해야하나 다음연도에 지연 제출함.

○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(배상책임 보험 미가입)

「위·수탁 계약서」에 따라 수탁인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하나, 2020. 5월 수탁 후 2020. 9. 17. 현재까지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음.

○ **근로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징구**

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하나 2018. 1.부터 2020. 1.까지 근로계약 체결한 7 건에 대하여 미징구함.

○ **안전조치 미흡**

안전사고,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 대책 마련 및 응급조치용 비상약품, 구호설비 등을 구비해야하나, 2020년 안전대응 매뉴얼 비상연락망 센터위치가 현행화 되지 않았으며, 비상약품 유통기한 만료되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.

3 ◆◆◆◆◆

○ **물품 및 증식비 지급 관리 부적정**

‘**■■■■** 사업’을 진행하며, 대상자 가정방문시 물품 배부 및 자원봉사자에게 증식비를 지원 후 수령증(지원근거)을 누락함.

○ **운영규정 변경 절차 부적정**

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센터 운영규정을 변경하거나,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음.

○ **근로계약서 작성 등 부적정**

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거나,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하나 미징구함.

○ **관내출장 관리 부적정**

부서장의 출장신청서 결재없이 출장을 실시하고 관내 출장비 지급함.

○ **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**

보조금 사업 수행시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, 일반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함.

○ **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**

연 1회 관리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해야하나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지않아 물품관리를 소홀히 함.

○ **사업계획서 제출 지연**

「위·수탁 계약서」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 다음연도에 지연 제출함.

4 ○○○○○○ (관리부서)

○ **영유아 보육 조례의 이용료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**

「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(이하 ‘영유아 조례’)」 제17조(회원 등록 등)제1항에 따르면,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, 같은 조례 제18조(이용료 등)제1항 [별표1], [별표2]에는 이용료 및 등록비를 포함한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, 이용료 등 기준 [별표 1]에는 등록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, 비회원에 대하여도 이용료 기준을 정하고 있음.

이는 영유아조례 제17조 ‘회원등록’ 에 따라 비회원은 이용할 수 없는 데도 비회원에 대한 이용료가 책정되어있고, 등록비에 대한 규정은 없는 데도 등록비 반환규정은 있는 등 조례의 조문이 서로 상충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됨.

5 ◇◇◇◇◇◇ (관리부서)

○ **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절차 부적정**

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위탁받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나, 2016년 수탁자 선정시 내부계획(◆◆◆◆◆ 민간위탁 계획)에 ‘기존 위탁운영기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지정한다’ 라고 명시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3년간 위·수탁계약을 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함.